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3. 9. 14(목) 10:00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7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혜택 부여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인원 변경 및 구성 시
성별균형 고려(안 제5조)
- 나.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(안 제22조의2제2항)
- 다. 관련 조례 제·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
사용료 감면 대상자 변경(안 별표 3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6조제1항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- 다. 합의기관: 육아종합지원센터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관련 조례 제·개정에 따라 사용료 감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나. 주요 내용

- 1)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인원 변경 및 구성 시
성별균형 고려(안 제5조)
 -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(2021. 12. 7)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함.
- 2)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(안 제22조의2제2항)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에 따라 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함.
- 3) 관련 조례 제·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기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감면 대상자 변경(안 별표 3)
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」 제2조
 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일부개정안 추진
우수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

다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관련 조례의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용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

[시행령 2023. 1. 1.] [대통령령 제32686호, 2022. 6. 7., 타법개정]
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) ①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중앙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지방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2. 6. 29., 2021. 3. 2., 2021. 12. 7.>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(약칭 : 자원봉사법)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, 타법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